

2021년도 화성산업진흥원(HIPA) 시제품 제작지원 사업 2차(하반기) 모집공고

화성시 관내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해 올해 3월 출범한 화성산업진흥원(HIPA)에서는 우수한 아이디어 및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제품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는 “화성산업진흥원 시제품 제작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관내 스타트업의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2021. 7. 00.

(재)화성산업진흥원장

◆ 사업개요

- 사업명 : 2021년 화성산업진흥원(HIPA)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1. 04. ~ 12.
 - 추진목적 : 유망 스타트업의 아이디어 및 기술을 발굴하고 최단기간 내 상용화되도록 밀착 지원하여 사업화 기반 확보
 - 사업대상 : 업력 3년 이내의 스타트업
- ※ 단, 관내 이전예정기업의 경우 선정 후 1개월 이내 이전 후 사업자 등록증 필수제출
- 사업내용 : 우수한 아이디어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메이커 및 초기스타트업 중 제품화에 어려움을 겪는 창업자를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의 재료비, 제품설계비, 샘플제작비(Mock-up*) 등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

※ Mock-up : 실제 제작단계 이전에 실물 크기나 축적을 적용하여 제작한 모형

□ 추진일정



□ 지원사항

○ 시제품 제작비용 기업당 **최대 5백만원** 지원

- (지원방식) 지원금은 선정기업의 사업 결과 및 정산보고서에 근거하여 선 지출된 비용 중 최대 5백만원(공급가액 기준)까지 지원
- (지원항목) 시제품제작 재료비, 외주가공비, 설계비(3D스캐닝) 및 초기 제작 금형, 기타 제작 분야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 지원

지원항목	세부내용
재료비	- 신청서 상의 시제품 제작을 위해 사용되는 재료 또는 원료 구입 등 ※ 양산용 재료, 최종결과물과 상응하지 않는 재료비 등은 인정 불가
설계비	-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제품설계(CAD) - 제품형상 스캔을 통한 맞춤형 설계 등
디자인 개발비	- 제품의 외형/성능/기능 향상을 위한 디자인 개발 - 용기(Bottle) 디자인 및 제품개발 ※ 홍보 및 마케팅 비용으로 간주되는 디자인 비용은 지원하지 않음.
목업/금형 제작비	- 양산 이전의 테스트 샘플 제작(Prototyping/Styling) 등 목업 제작 - 제품생산을 위한 금형 가공 및 제작 의뢰 등
초도양산	- 시장진출 테스트 및 마케팅용 초기 제품 제작 ※ 대량생산 및 정식판매용 제품 제작 제외

※ 그 외 항목은 원칙적으로 지원이 불가하며 예외상황의 경우 진흥원의 해석을 따름

◆ 2차 모집개요

- 모집규모 : 15개사 이내
- 접수기간 : 2021.07.19. ~ 2021.07.30.(금) 18시까지
- 지원자격 : 공통기준 충족한 기업 중 관내 소재* 기업

구분	자격 세부내용
공통기준	<p>공고일(21.07.19)로부터 업력 3년 이내(18.07.20 이후 설립)의 개인 또는 법인기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다수의 사업자등록증(개인, 법인)을 소지한 경우, [참조3] 중소기업 지원법 시행령 <제1장 제2조(창업의 범위)> 에 따라 신청자격 적합여부 결정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p>※ 근거: [참조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장 제2조, [참조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1장 제3조</p>
	<p>*관내 소재기업 인정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화성시 내 본사가 위치한 기업 ② 화성시 내 공장이 위치한 기업 - 단, 본사 설립일 기준 업력 3년 이내만 가능 ③ 화성시 내 연구소가 위치한 기업 - 단, 본사 설립일 기준 업력 3년 이내만 가능 ④ 화성시로 이전 예정인 기업* - 단, 본사 설립일 기준 업력 3년 이내만 가능 ※ 신청서 등록 시 협약서 함께 제출 必 - 공장/연구소 이전인 경우도 인정
우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성산업진흥원 스타트업 아카데미 교육생 우대 📄 가산점(3점) 부여 ※ 참가링크 : https://hipa.hscity.go.kr/business/detail/76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일(21.07.19)기준 예비창업자는 공고마감 전 창업한 경우 지원가능 - 관내 지점(지사) 등록기업 지원불가

□ 신청방법 : '기업지원 플랫폼' 온라인 접수

- 화성산업진흥원 '기업지원플랫폼' 접속(hipa.hscity.go.kr, 크롬접속)
→ 회원가입(승인필요) → 지원사업정보 →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 참여신청
- 회원가입 후 승인절차는 1~2일 소요되므로 **미리 가입요망**
- 신청서식은 기업지원플랫폼 사업신청란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그 외 제출서류까지 구비 후 플랫폼에 업로드하여야 함.
- 방문·이메일 제출 불가, 플랫폼 이외 경로로 신청한 경우 무효처리
- 최종제출 이후 수정 불가, 제출 전 서류확인 요망
- 마감 당일에는 접수가 몰릴 수 있으므로 **미리 제출할 것을 권고함.**
- 기업지원플랫폼 사용안내서는 고객센터-공지사항 확인

□ 제출서류 목록

● 필수제출 서류 : 적색(*)표시 ● 선택제출 서류 : 검은색표시

구분	제출항목	제출단계 <3단계 신청정보 입력 중>
지원 서식	○ 지원사업 신청서식 1부(제1, 2, 3호) (HWP 또는 PDF 형식)	「제출서류 업로드」
그 외 제출 서류*	○ 법인 등기부등본 1부 ※ 법인기업 필수	
	○ 공장등록증 1부 ※ 관외 본사를 둔 관내 공장 등록기업 필수	
	○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1부 ※ 관외 본사를 둔 관내 연구소 등록기업 필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http://www.rnd.or.kr)에서 발급	
○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국세 완납 증명서 1부 ○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필수정보 조회 및 제출」 ※ 직접제출 버튼 누르면 파일 업로드 가능

※ 그 외 제출서류는 모두 공고일('21.07.19)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제출

※ 그 외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는 파인드 시스템* 또는 직접제출 방식 중 선택하여 제출 가능

※ 파인드 시스템이란? : 민원발급서류(사업자등록증명원 등) 자동 업로드 기능, PC 설치필요

□ 지원 제외대상

- 공고일('21.07.19) 기준 업력 3년 초과인 자('18.07.19 이전 창업자)
- 공고일 기준 화성시 외 지역 소재기업(선정 후 1개월 내 이전시 가능)
- 공고마감일 기준 예비창업자(사업자 미등록자)인 경우
- 신청서, 발표자료 등 허위기재가 발견된 경우*
 - ※ 진위여부 파악을 위한 현장평가가 수반될 수 있으며, 허위로 판명될 경우 최종선정 이후에도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동일 아이템/기술로 진흥원 사업이나 타 기관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
- 휴·폐업 혹은 파산·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 근거: [참조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 기타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선정방법(서류 및 발표평가)

※ 선정과정별 결과발표에 대한 안내는 개별 연락망으로 통지드리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차 서류평가

○ (선정규모) 서류 평가점수 상위 20개사 선정

- 결과발표 : 8월 둘째주, 기업지원플랫폼 '고객센터-공지사항' 확인

□ 2차 발표평가

○ (선정규모) 서류 통과자 중 발표 평가점수 상위 15개사 선정

- 평가일시 : 8월 3-4째주, 기업지원플랫폼 '고객센터-공지사항' 확인

※ 서류합격 공지일에 발표평가일시(날짜, 시간, 발표순서 등) 공고 예정

- 평가장소 : (재)화성산업진흥원 대회의실 (동화길 51, 원희캐슬 5층)

- 평가방식 : 프레젠테이션 발표 및 질의응답(5분 발표, 5분 질의)

- 평가기준 : 최저·최고점 제외한 심사위원 평균 고득점순으로 최종 선정

- 결과발표 : 평가 후 일주일 내, 기업지원플랫폼 '고객센터-공지사항' 확인

○ 발표자료는 추후 이메일(kjy@hsbiz.or.kr) 제출

※ 평가일정 및 장소는 진흥원 사정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별도통지).

◆ 문의처

□ (재)화성산업진흥원 기업지원팀(☎ 031-278-4233, ✉ kjy@hsbiz.or.kr)

※ 전화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이메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공지

□ 제출하신 일체 서류 및 물품은 반환하지 않으니 양해바랍니다.

□ 선정결과 통보 후 참가 취소 시 향후 유사 사업에 참여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참가기업은 향후 성과보고서, 시제품 결과물, 설문 조사, 실적 제출 등 진흥원 요청자료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제출 내용 미흡시 진흥원의 자료 보완 요청에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차후 화성산업진흥원이 지원하는 사업에 참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심사기준**

평가 항목		점수
기술성	- 기술 또는 서비스의 구체성 여부 - 기술의 구현 적정성 여부	30
독창성	- 스토리, 소재, 디자인, 기술 등 참신성 반영 - 경쟁사 및 경쟁제품 대비 차별성 여부	20
필요성	- 지원 기업 및 제품의 지원 필요성 - 본 사업목적과 신청 제품/기업과의 적합성	20
시장성	- 시장진출 및 성과창출 가능성 여부	30
가산점	- 진흥원 교육사업(스타트업 아카데미) 참가자(3점)	3
합 계		103

※ 상기 공고내용은 진흥원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재]화성산업진흥원장

참조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약칭: 중소기업창업법)

[시행 2020. 10. 8] [법률 제17244호, 2020. 4. 7,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 27., 2016. 5. 29., 2020. 4. 7.>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의2. “재창업”이란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재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의2. “재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재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재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의3. “초기창업자”란 창업자 중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이하생략-

참조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시행 2020. 10. 8] [대통령령 제31108호, 2020. 10. 8, 일부개정]

제3조(사업의 개시일) 법 제2조제2호, 제2호의2 및 제2호의3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6. 28., 2016. 7. 28., 2016. 11. 29.>

1. 창업자 또는 재창업자가 법인이면 법인설립등기일
2. 창업자 또는 재창업자가 개인이면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개시일. 다만, 법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참조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시행 2020. 10. 8] [대통령령 제31108호, 2020. 10. 8, 일부개정]

- 제2조(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 10. 8.>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 받아 해당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다만,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해당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법인인 중소기업은 제외한다)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3.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다만,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이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단독으로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른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거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5.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해당 법인과 그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6.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7. 10. 23., 2020. 10. 8.>
-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은 추가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2분기 동안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을 말한다.

참조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시행 2020. 10. 8] [대통령령 제31108호, 2020. 10. 8, 일부개정]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업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한다. 이 경우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1. 일반유흥주점업
2. 무도유흥주점업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전문개정 2019. 6. 11.]